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중앙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이혜은

전화 02-530-4780 / 팩스 02-536-5410

보도자료

2021. 9. 16.(목)

제 목 前 법무부차관 운전자폭행 사건 수사 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 - ☑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(제11조 제2항 제3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 - ☑ 관련사건을 공소제기 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의 불기소사건(제10조 제1항 제3호)
 - ☑ 피의자, 처분일시, 죄명, 처분주문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0조 제2항)
 - ☑ 혐의사실 요지, 불기소이유 요지,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중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내용(제10조 제3항)
- ※ '21. 9. 16.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

서울중앙지방검찰청(형사제5부장 박규형)은 前 법무부차관의 운전자 폭행 사건을 수사하여, 前 법무부차관 이○○를 특가법위반(운전자 폭행등)죄 및 증거인멸교사죄로 불구속 기소하고, 위 운전자폭행 사건의 담당 경찰관을 특가법위반(특수직무유기)죄,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.

I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○ 피고인

- 이○○(前 법무부 차관, 변호사)
- 甲(A경찰서 경사, 운전자폭행 사건 담당경찰관)

○ 공소사실 요지

■ 피고인 이○○

- 1) '20. 11. 6.경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,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**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운전자폭행)]**
- 2) '20. 11. 8.경 위 택시기사와 합의한 후 위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여 증거인멸을 교사하고, 이에 택시기사는 '20. 11. 9.경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동영상('20. 11. 7. 전송)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함 **[증거인멸교사]**

■ 피고인 甲

- 1) '20. 11. 11.경 사실은 A경찰서에서 위 택시기사가 제시한 휴대폰을 통해 위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증거로 확보하거나 분석하는 등의 조치 없이 운전 중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죄로 의율한 후 처벌불원을 이유로 내사종결하여 직무를 유기 **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직무유기)]**
- 2) '20. 11. 11.경 사실은 블랙박스 업체 및 택시기사와의 연락을 통해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상신하고, 이후 위와 같이 택시기사가 제시한 휴대폰을 통해 위 동영상을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결재진행 중인 내사결과보고서를 회수하여 수정하는 등의 조치 없이 직속상관들로 하여금 결재하게 하여 내사기록에 편철 **[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]**

II 수사 경과

- '20. 12. 23. 고발장 접수(이○○의 운전자폭행 및 경찰관들의 직무유기 등)
- '21. 1. 관련 압수·수색 및 통신영장 집행

- '21. 2. 9. 추가 고발(이○○의 증거인멸교사)
- '21. 2. 10. 고발된 '증거인멸교사' 부분(2건), 서울경찰청에 이송
- '21. 3. ~ 9. 이○○ 및 관련 경찰관 등 피의자, 참고인 조사 등 수사진행
- '21. 7. 7. 서울경찰청, 이○○의 증거인멸교사 및 택시기사의 증거인멸, 甲의 특가법위반(특수직무유기) 혐의 송치
- '21. 9. 16. 이○○ 및 甲 불구속 기소 등
 - ※ 甲의 상관인 경찰서장, 형사과장, 형사팀장에 대하여는, 甲으로부터 동영상의 존재를 보고받지 못하였고, 부당한 지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특가법위반(특수직무유기) 내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(혐의없음) 처분하고, 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
 - ※ 택시기사에 대하여는 폭행 사건의 직접 피해자인 점, 가해자와 합의한 후 그 부탁에 따라 동영상을 지우게 된 점 등 참작하여 같은 날 "기소유예" 처분

Ⅲ 참고 사항

- 증거인멸 경위 및 경찰의 운전자폭행 사건 내사종결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 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, 장기간에 걸쳐 철저히 수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
- 또한 「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」(대검예규)에 따른 **부장검사회의**를 통해 법리 및 사실관계 인정 등에 관해 신중히 검토하여 의사결정 ☑